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2022-13
----------	---------

발의연월일 : 2022. 1. .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근거 조항 삭제(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5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협조부서 및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찍은”을 “촬영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실한 때에”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수한 때”를 “회수하였을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 <u>시</u> ----- ----- ----- ----- -----.</p>
<p>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p> <p>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u>별지 제1호 서식</u>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p> <p>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u>찍은 것</u>이어야 한다.</p> <p>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2호 서식</u>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p> <p>① ----- --- <u>별지 제1호서식</u>----- ----- -----.</p> <p>② ----- ----- ----- <u>촬영한</u> ----- --.</p> <p>③ ----- ----- ----- <u>별지 제2호서식</u>----- ----- -----.</p>
<p>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신분을 <u>상실한 때</u>에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 ----- <u>상실하였을 경우</u>에 <u>는</u> -----.</p>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 회수하였을
경우-----

--.